

영등포구의회
제207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
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8. 4. 16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
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 356호로 2018년 4월 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생활체육진흥법」 제9조(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)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영등포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,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규정(안 제1조~안 제2조)
- 나.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~안 제4조)
- 다. 스포츠클럽의 지도·감독에 대한 규정(안 제5조)
- 라. 부정한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)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생활체육진흥법」, 「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5. 검토의견

○ 이 제정 조례안은 「생활체육진흥법」 제9조(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)제2항 ‘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’는 규정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원내용, 방법,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 총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○ 제정안의 주요내용은,

- 안 제1조,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3조, 제4조는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공체육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5조에서 스포츠클럽의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6조에서 부정한 보조금의 환수 규정을 명시하였음.

○ 검토결과,

본 조례안은, 공공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양한 연령·계층의 지역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종목을 즐길 수 있도록

공공스포츠 동호회를 육성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한 체육복지 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 생활체육진흥법

제5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클럽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·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.

2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

제4조(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
2.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
3.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
4.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·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